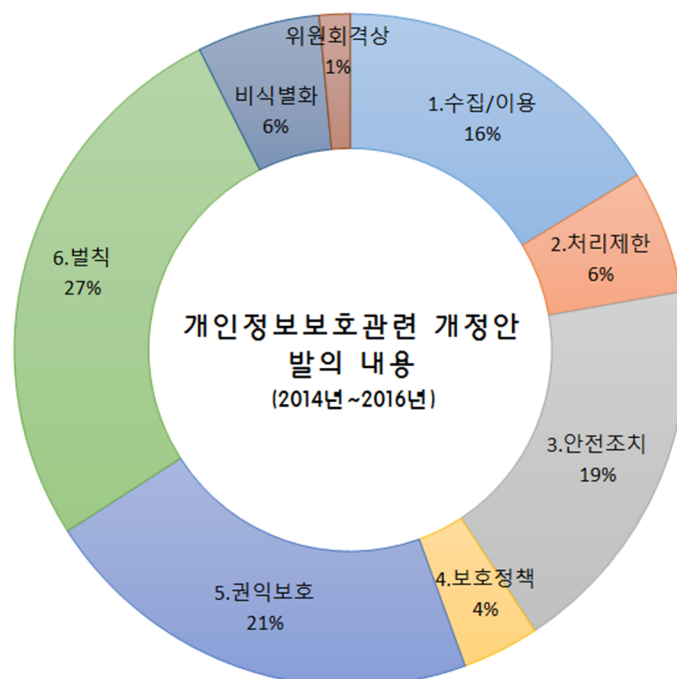


 정보화사회실천연합 한국정보사회연구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06. 02(금) 조간(온라인 06. 01.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06. 01(목) 09:00		총 15쪽(붙임 12쪽 포함)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 (070-7797-2583)	작성 자	

그때뿐인 개인정보보호

- 뒷북 친 개인정보보호관련 개정안들 -

- 2014년 1월 카드3사의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하여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정치권 및 정부는 입법 추진 및 대책발표를 앞다투어 내놓았다.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의된 142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36건), 정보통신망법(79건), 신용정보법(27건))의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일이 터진 후에 보상 및 처벌을 강화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한 정보 사회의 기본이다.

- 3년간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항목 중 사후단계에 해당하는 벌칙조항이 28%, 권익보호조항이 21%로 전체 49%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전단계에 속하는 수집이용 및 처리제한단계는 23%를 보였으며, 보관단계인 안전조치는 18%에 그치고 있었다.
-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후단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수집과 투명한 활용 및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나 빅데이터 등의 이슈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활용을 용인하는 비식별화 개정안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법 및 규제프리존 법안의 발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 후 제도와 보호에 대한 의식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법들이 무분별하게 발의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2000002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4인)	의원	2016-05-30				소관위접수
1916842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1인)	의원	2015-09-14	2016-05-29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2000026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의원 등 125인)	의원	2016-05-30				소관위접수
1918652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강석훈의원 등 13인)	의원	2016-03-24	2016-05-29	임기만료폐기		

< 빅데이터 관련 법안 발의 현황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 카드3사 유출사태 이후 강화하던 법 개정이 1년만에 빅데이터(Big Data), 핀테크(FinTech)등을 명분으로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없이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를 수용하는 비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 그 동안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보면 느슨한 내부통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한 정보 사회의 기본이다.

취약점을 내포한 서비스(시큐어코딩 미적용), 초보적인 해킹방법도 탐지 못하는 정보보호체계 등 대부분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마저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대기업은 개인정보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태까지 보였다.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시 풍조의 자성 및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지 않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는 국민은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헌법을 개정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고, 법을 개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는 현실에 비추어 법안을 발의하는데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식별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무엇보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일원화 및 수집 및 관리단계에서 과도한 정보수집과 유출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끝-

□ 붙임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안 조사 내용
2.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3. 비식별화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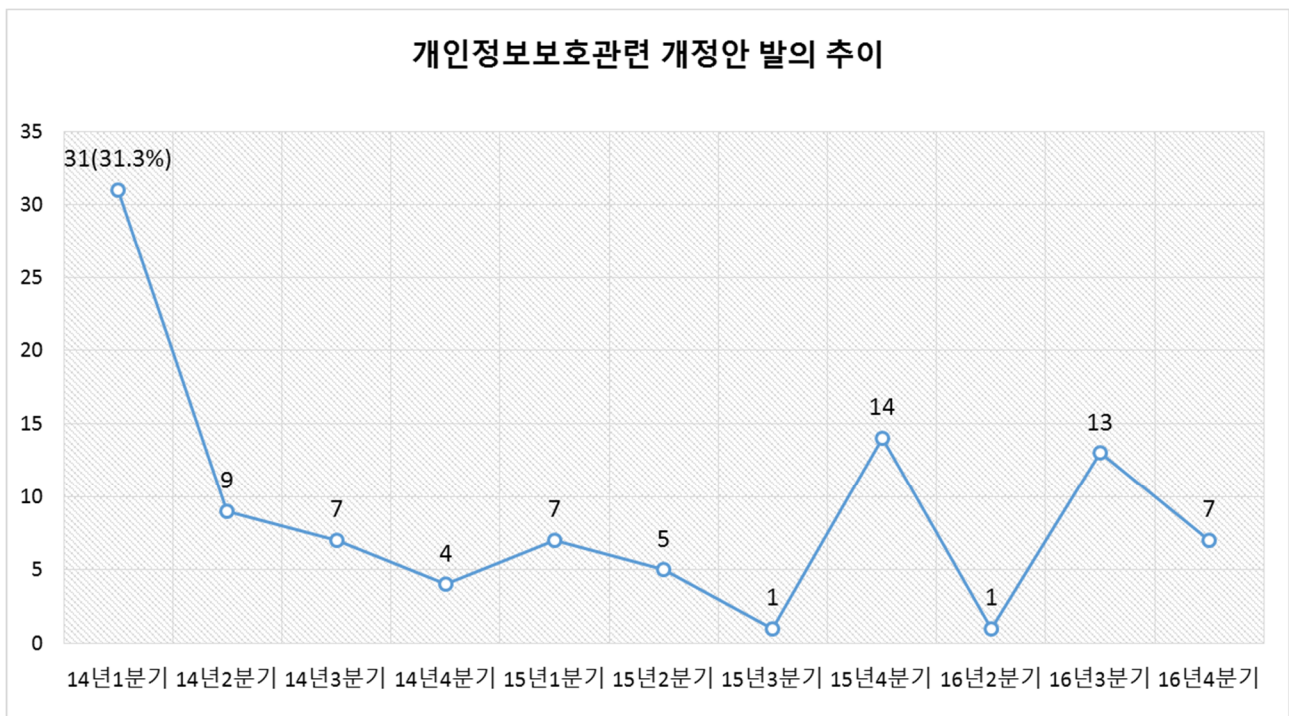
붙임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안 조사 내용

- 목적 : 2014년도1월 카드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후 빅데이터, 핀테크 등 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이 요구되는 현실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하여 입법 내용 분석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 대상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관련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142건 중 개인정보보호와 직접 관련된 개정안 99건을 분석.
- 각 정당의 표기는 2016년말 정당명칭으로 표기, 정당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표기.

■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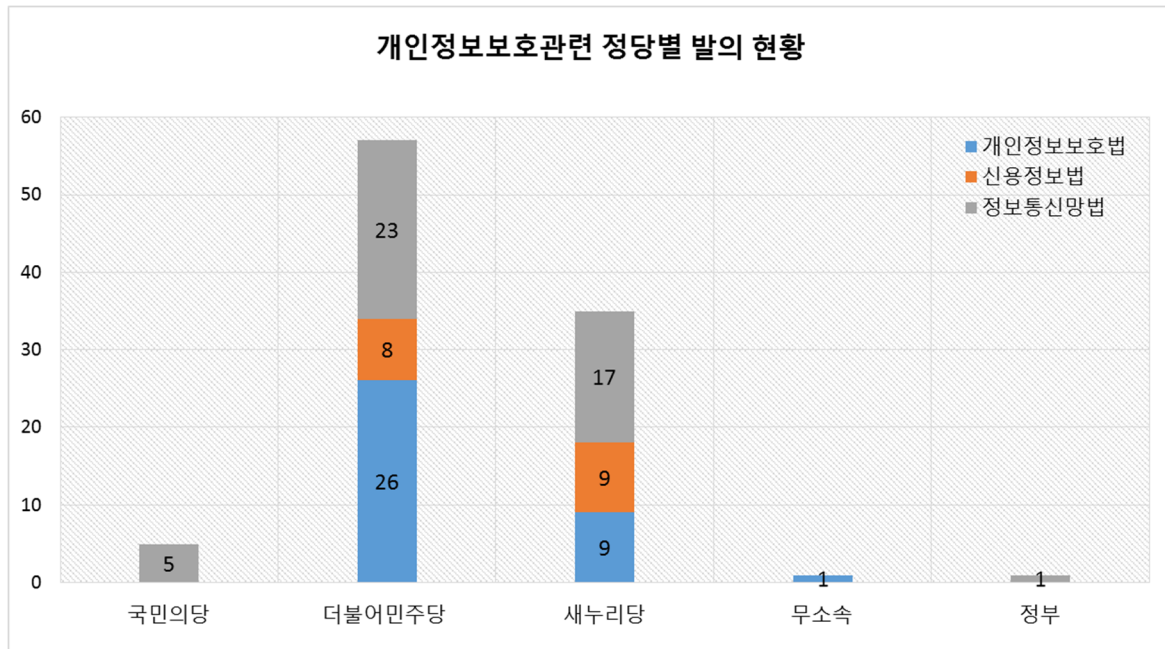
- 2014년1월 카드3사의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하여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국회 및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추진 및 대책발표를 앞 다투어 내놓았다.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142건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36건), 정보통신망법(46건), 신용정보법(17건) 총 99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중 2014년 1분기에 31건을 발의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개정안 발의 건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개인정보보호관련 개정안 발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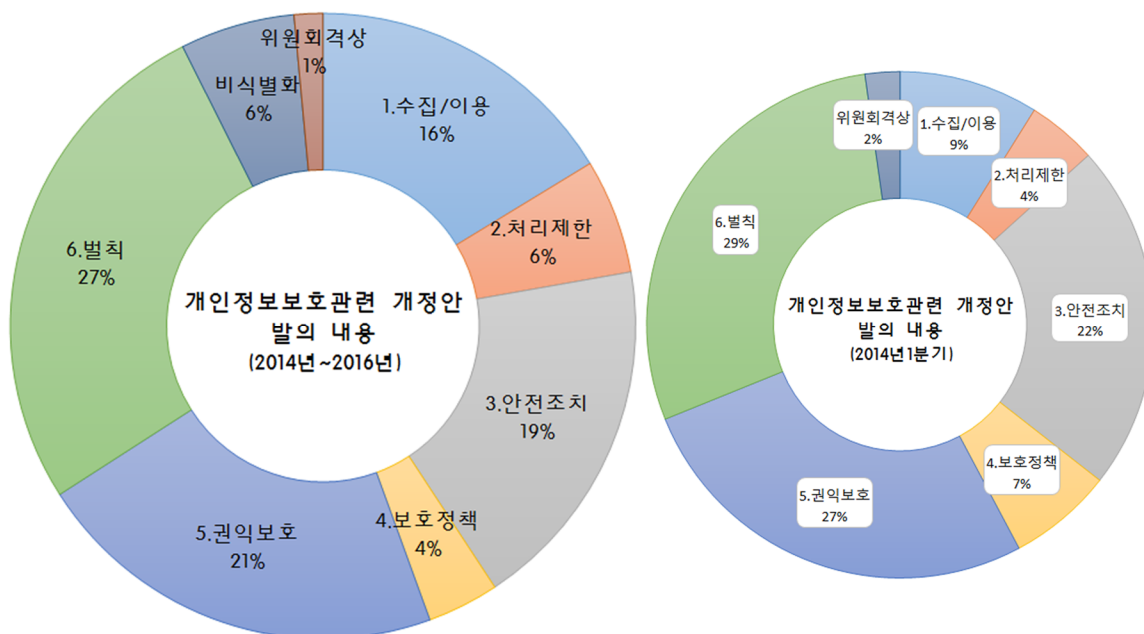
○ 카드사 유출사고 직후인 14년1분기에만 31.3%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는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보였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 정당 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새누리당이 35건, 뒤늦게 창당한 국민의당이 5건, 무소속이 1건, 정부가 1건 순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개인정보보호관련 정당별 발의 현황 >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개정안 99건을 주요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개정안중 사후단계에 속하는 권익보호와 벌칙 개정안이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집단계는 22%, 보관단계는 19%를 보이고 있었으며, 비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한 비식별화 관련 개정안도 6%를 보이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관련 주요 항목별 발의 현황 >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한 정보 사회의 기본이다.

또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2014년도 1분기의 3법의 개정안 발의 현황에서도 사후단계의 내용을 전체 개정안의 절반을 넘어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므로 유출 후 보상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집 및 관리단계에서 과도한 정보수집과 유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나 빅데이터의 이슈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8건이 발의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개별법으로 빅데이터법 2건, 규제프리존법 2건의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2000002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4인)	의원	2016-05-30				소관위접수
1916842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배덕광의원 등 11인)	의원	2015-09-14	2016-05-29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2000026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의원 등 125인)	의원	2016-05-30				소관위접수
1918652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강석훈의원 등 13인)	의원	2016-03-24	2016-05-29	임기만료폐기		

< 빅데이터 관련 법안 발의 현황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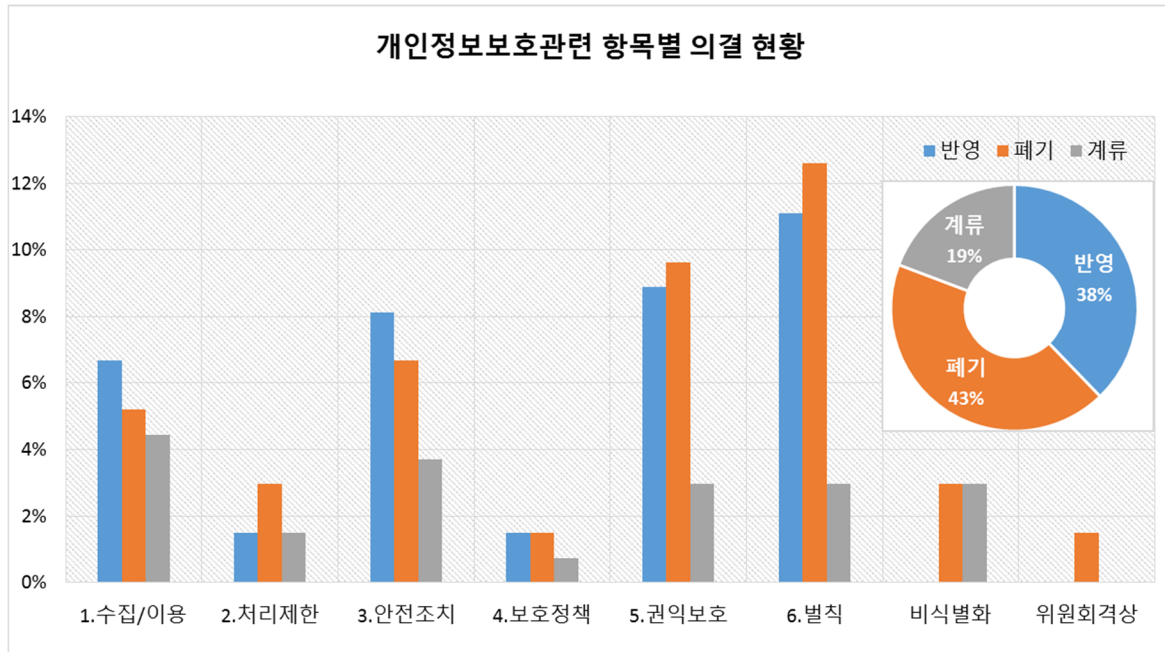
○ ICT기술이 발전으로 부득이하게 새로운 제도가 필요로 할 수 있지만 기존 제도 내에서도 변화되는 현상을 수용할 수 있음에도 개별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은 도리어 또 다른 규제로 해당 산업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법을 제정하게 되면 인공지능(AI)법, 사물인터넷법(IoT)법, 3D법, 가상현실법 등 들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인가?

○ 카드3사 유출사태 이후 강화하던 법 개정이 1년만에 빅데이터(Big Data), 핀테크(FinTech) 등을 명분으로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없이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를 수용하는 비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 발의된 개정안의 국회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38%가 대안반영 등으로 입법화가 이루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한 정보 사회의 기본이다.

어졌으며, 48%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19%는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우려가 높았던 비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개정안 및 빅데이터 관련 개별법안들이 의결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쉬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여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개별부처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정보를 국민의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원칙하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 필요로 하다.

그 동안 대형 유출사건을 원인이 느슨한 내부통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취약점을 내포한 서비스(시큐어코딩 미적용), 초보적인 해킹방법도 탐지 못하는 정보보호체계 등 대부분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마저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대기업은 개인정보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태까지 보였다.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시 풍조의 자성 및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지 않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는 국민은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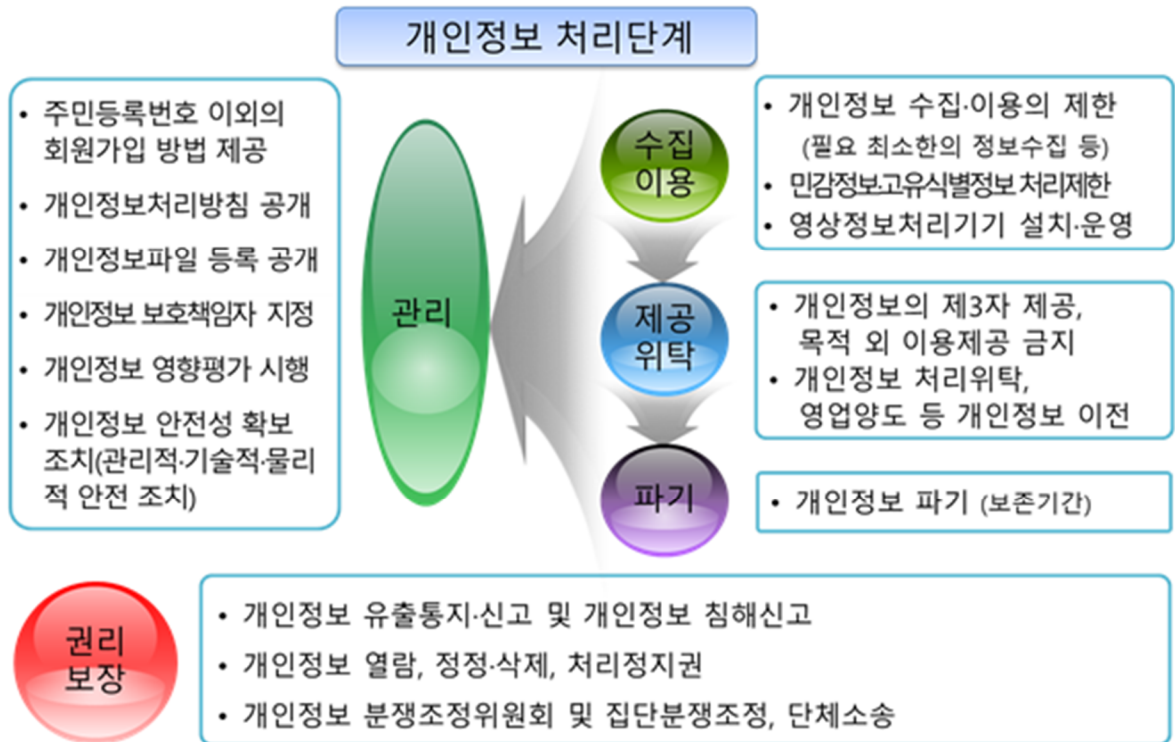
헌법을 개정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고, 법을 개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는 현실에 비추어 법안을 발의하는데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일원화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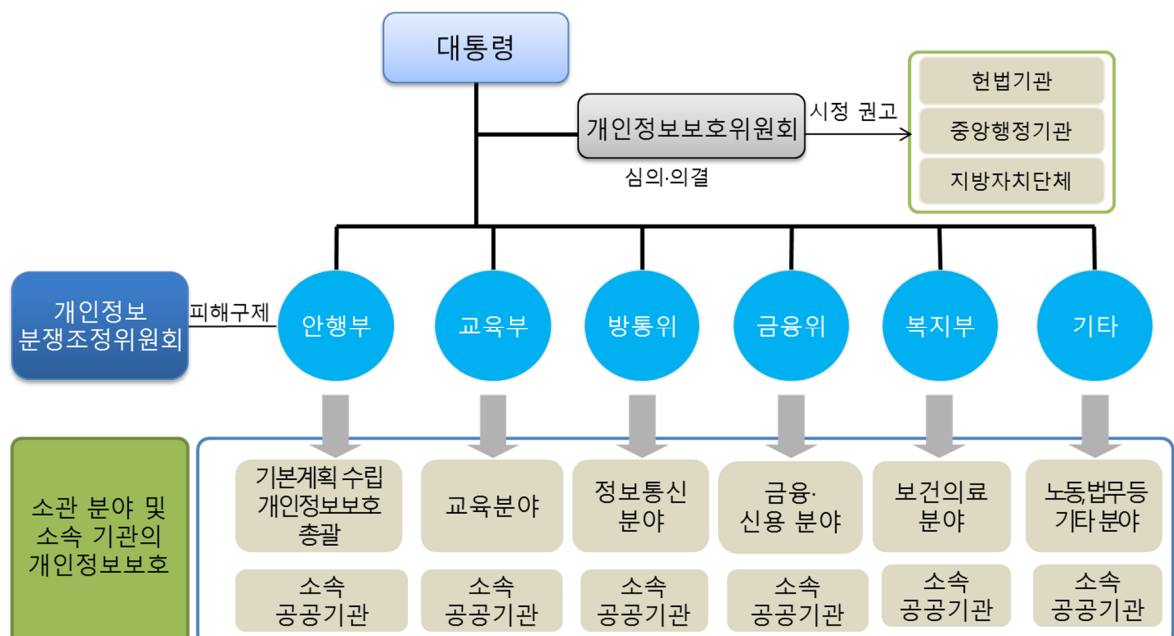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2011.3.29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 저장·관리, 이용·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제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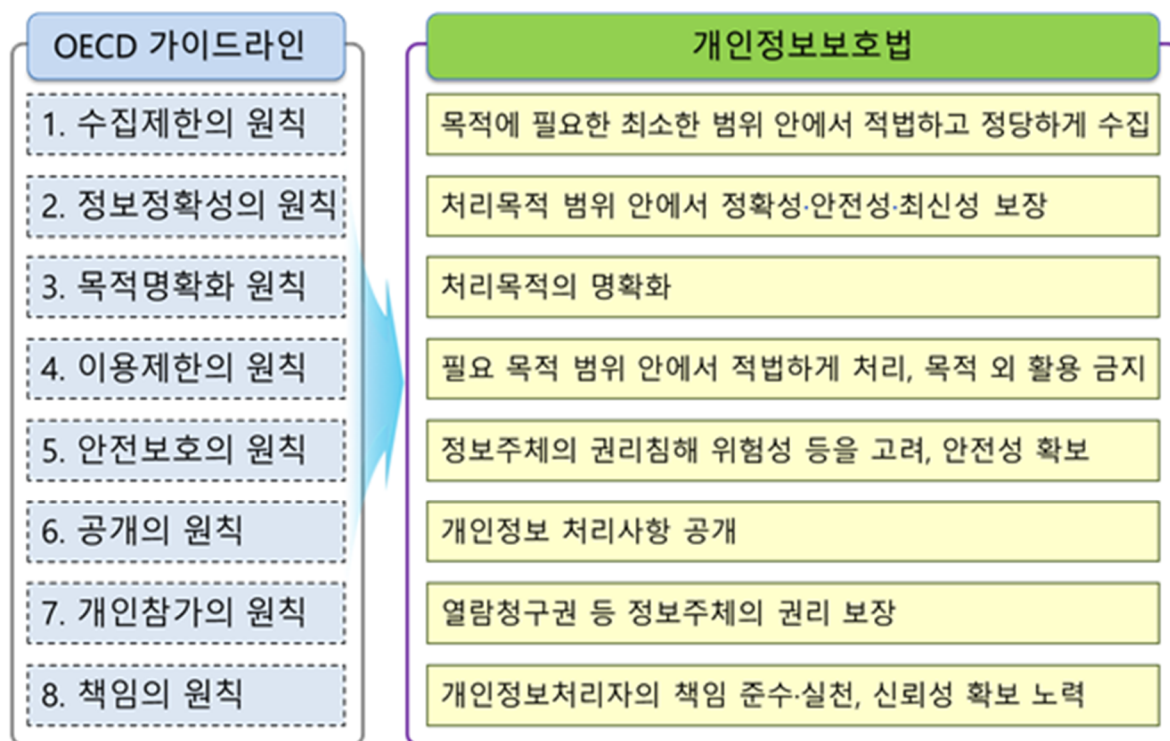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법의구성



■ 개인정보보호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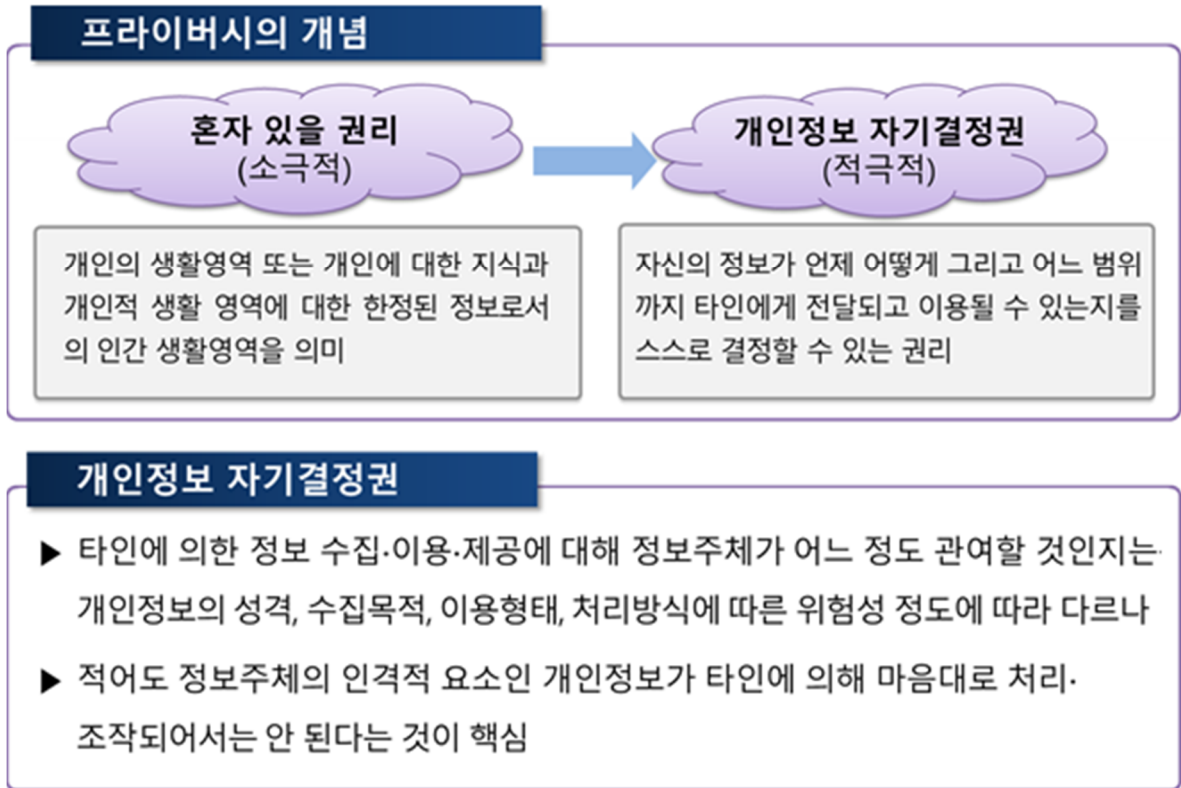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1980년) ■ 국가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기준	
원칙	내용
1. 수집제한의 원칙	어떠한 개인정보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함
2. 정보의 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는 사용목적과 범위가 부합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며 갱신되어야 함
3. 목적 명확화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은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수집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4. 이용제한의 원칙	정부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됨
5. 안전성 확보 원칙	개인정보가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정보수정 및 공개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
6. 개인 참가의 원칙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 삭제, 보완 청구권을 가짐
7.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내용을 수집, 관리하고 있는가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제 원칙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책임이 있음

■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붙임 3

비식별화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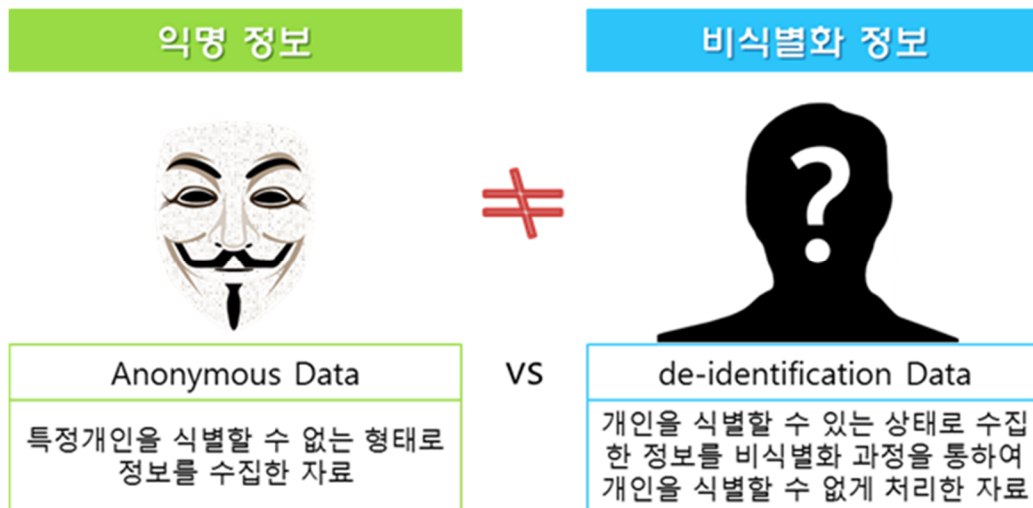
□ 비식별화란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란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과정. (Single out, Linkability, Inference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절차를 통하여 동일함을 증명할 수 없도록 하는 과정)

○ 익명정보 vs 비식별화정보

•Anonymous Data : 정보의 수집단계에서 근원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한 정보

•de-identification Data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 과정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정보



*) 익명정보와 비식별화정보의 차이는 개인정보수집자가 정보주체를 인지할 수 있는 식별자를 포함하여 수집한 정보인가 이다. 여기서 익명 정보와 비식별화 정보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비식별화는 재식별화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개인을 작은 단위로 그룹화하여 개인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 비식별화 과정

- Single out : 특정 정보가 특정 개인에게 대응
- Linkability : 특정 정보와 특정 개인을 연결할 수 있음
- Inference : 특정 정보로부터 특정 개인을 추론할 수 있음

○ 비식별화 관계

-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는 익명화와 가명화를 포함하는 과정
- 익명화(anonymization)와 가명화(pseudonymization)는 비식별화를 하는 단계
- 가명화 정보(Anonymous data) : 관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끔 특정 정보를 처리한 상태로 'A와 B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둘은 서로 다르다는 구별은 가능한 것'
- 익명화 정보(Pseudonymous data)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에서 식별자를 가명(pseudonym)으로 대체하여 관련된 개인과의 연결성을 제거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된 것

□ 비식별화 조치의 문제점

○ 비식별화 정보의 모호성

- 비식별화 정보의 용어에서 Pseudonymization Data(가명화 정보)와 Anonymization Data(익명화 정보)는 개인을 재식별하는데 있어 노력의 정도의 차이가 보일 뿐, 재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비식별화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가 적절하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반증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는 경우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모호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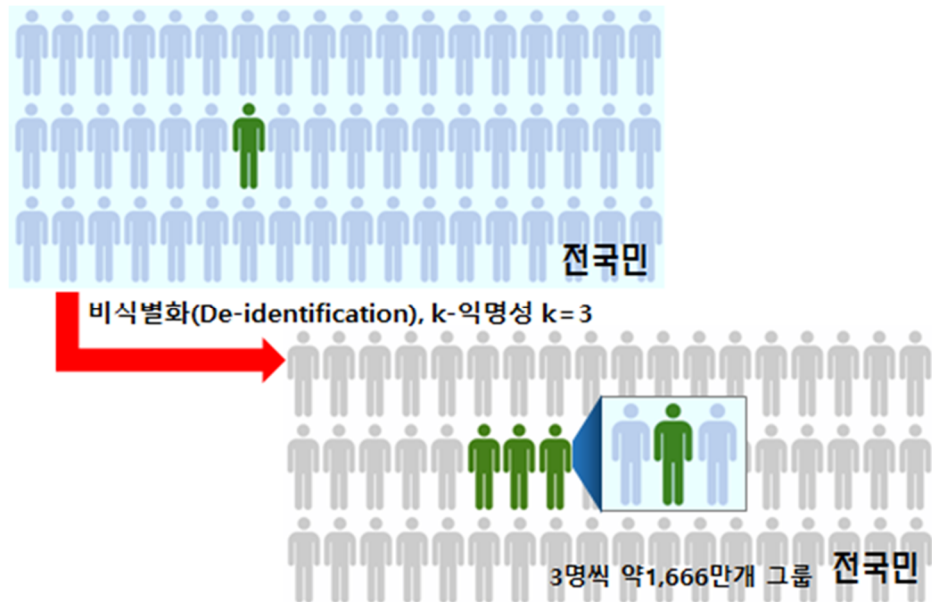
○ 개인정보 비식별화 적정성 검증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지금과 같은 익명성을 검증하는 지표인 k익명성을 3이상이면 익명성이 충족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볼 때 개인정보는 5천만명 중의 1명을 찾는 문제이나, k-익명성의 k값을 3으로 비식별화된 정보는 5천만명을 약 1천6백6십6만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것으로 특정개인을 3명 중에서 1명을 찾는 문제로 단순화 된다.

이렇게 작은 단위로 개인을 분류한 정보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비식별화 정보를 1대1 마케팅 및 타겟서비스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나 별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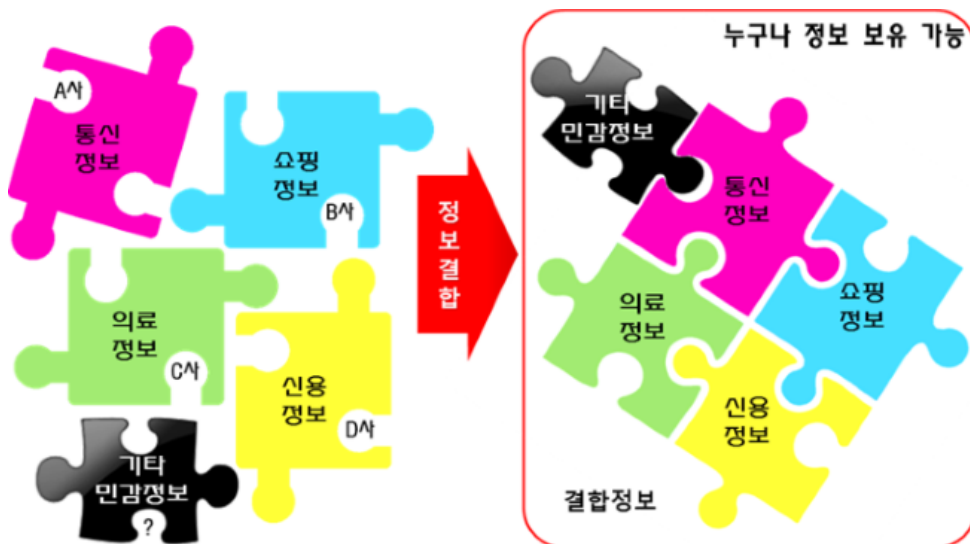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관련 제도에서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통계목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통계처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어 미국의 경우 지리적 단위를 2만이상으로 하도록 하듯이 좀 더 세부적이며 합리적인 규정의 마련이 필요로 하다.



○ 비식별화 정보의 결합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과거 인터넷실명제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개인의 식별자를 포함한 공통적인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기업간 개인정보의 직접결합을 허용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모든 민감정보(의료, 금융, 통신, 위치 등)에 대하여 보유가 가능하도록 된 현 가이드는 국민 사생활침해에 재앙의 수준으로 그 위험성이 높다.



□ 양면성을 가진 개인정보 활용 더 고민이 필요

ICT기술의 발달된 지식정보사회에서 산업발전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어려우나 우리 사회의 현실성을 고려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주식별자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재식별화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비식별화를 통하여 활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이드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 수단으로 될 수 있어, 따라서 개인정보 활용을 충족하기 위해서 비식별화 정보를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제도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질 것이다.

- 식별자를 이용한 완전결합방식이 아닌 추론기술을 통한 추론결합(호주의 비식별화 제도)
- 익명성을 검증하는 k-익명성의 k값의 기준을 강화하여 익명성 강화
- 폐쇄적인 활용이 아닌 개방적인 활용을 제도적으로 마련으로 정보의 집중화 및 원시 데이터의 상품화 방지